

이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 甘川2洞 산복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생처리장까지 저희들 차량으로 대충 운행 km를 해보니까 約 10km 정도 왕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침시간대 이때는 소통이 빠릅니다. 마는 午後나 열時, 열한時, 아홉時 이때는 時間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평균소요시간을 저희들이 측정을 해보니까 아침에는 빠르고 午後에는 늦고해서 1回 約 50分 정도로 잡아주었습니다.

통상 아침 여섯시부터 저녁 다섯시까지로 하면 約 열시간이 所要됩니다. 마는 지금 現在 입장으로서는 午後 한시가 되면 모든 作業이 끝나고 종사원들이 사무실에 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住民에게는 제때 收去가 되지 않는 등 더욱 不便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는 每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물량으로 인해 조업단축, 점진적인 도산상태인 업체에 제도적인 개선없이 서비스개선 등 신속한 收去의 活性化만을 요구하는 것은 區民에게 오히려 不便을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사료되는 바 區民不便事項이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區의 행정지도강화는 물론,

업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判斷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조례는 污水糞尿및畜産廢水の處理에 관한 法律보다 강화되어 있어 上位法을 위배하고 있으므로 制度的인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委員님 여러분께서 꼭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사하는 것을 付託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沙下區污水糞尿및畜産廢水の處理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끝에 실음)

○委員長代理 金正植 曹台純 環境保護課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金漢墩 都市産業委員會專門委員 金漢墩입니다.

釜山廣域市沙下區污水·糞尿및畜産廢水の處理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報 告)

□ 근 거

기존 사하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를 96.1.8 오수·분뇨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법률시행 규칙 제55조제1항 범위내로 개정,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관련법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분뇨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나 정화조의 청소업(분뇨관련 영업)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업종별 기준(시행규칙 별표7 참조)

□ 개정내용

○분뇨관련 영업대행계약 기준중 인력기준은 분뇨의 수집, 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인이상

○차량 및 장비의 기준은 흡인식 차량1대이상(용량 3,600 l 이상)

○분뇨수집 운반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구역내에 두어야 한다.

□ 검토의견

기존 사하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가 96. 1. 8 개정된 법률 시행규칙보다 강화되어 있는 조례를 법률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개정함이 가하다고 판단됨.

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正植 金漢墩 專門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質疑順序입니다.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李石來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石來委員 李石來 委員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면 종전하고 달라진 사항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例로서 차량 및 장비에서 별표1의 개정안에 의하면 신고용전화 한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신고용 전화가 두대 이상입니다.

신고용 전화 한대의 대금이 課長 얼마입니까?

○環境保護課長 曹台純 전화청약금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대 45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石來委員 그렇습니까. 本人이 알고 있기로는 25萬 400원인데 이 金額까지도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금액까지도 여기서 줄여서 이렇게 차량 및 장비에 계재를 시킨다는 것은 바로 民願人의 民願을 제때제때 수렴하겠다는 의지가 미약합니다.

전화기라도 많아야 그때그때 주민들이 더구나 영세민이 불편한 사항을 그 불편한 사항은 바로 분뇨수거가 제때 안돼가지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나고 하는 그러한 것을 적은 전화기에 통화중이 돼버린다든지 이 전화를 사무용 또는 업무용 전화는 업무용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외 개인전화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만약 전화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통화중일 경우는 그러한 住民의 不便事項을 해소하기 위한 배려가 전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環境保護課長 어떻게 생각합니까?

○環境保護課長 曹台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신고용 전화는 전용회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